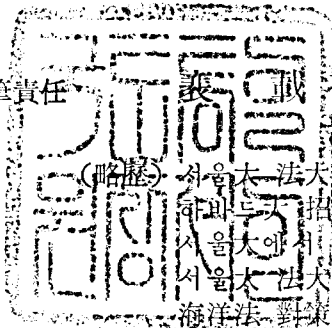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南北關係一對備方案研究

現休戰協定體制에서 본 西海5島嶼의 問題點 發生原因 및 對策

研究執筆責任



湜

(略歷)

서울大 法大卒 (1949 入學)
 서울大 法大 招請教授 (1960年)
 서울大 法大 博士學位 (1969年)
 서울大 法大 教授 (現在)
 海洋法 對策委 諮門委員 (現在)

刊行責任

鄭 大 圭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序 論	1
2. 休戰의 一般的 性質과 韓國休戰 協定の 法的 性格	7
(1) 休戰의 一般的 性質	7
(2) 韓國休戰協定の 法的 性格	10
3. 休戰協定과 西海 5島에 관한 問題	15
(1) 休戰協定上 西海 5島에 관한 規定	15
(2) 西海 5島 海域에 대한 北韓의 主張과 休戰協定	18
(3) 西海 5島 海域에 대한 北韓의 主張과 一般國際法	20
(가) 北方警備限界線과 休戰體制 形成	20
(나) 西海 5島의 國際法上的 地位	20
(다) 西海 5島海域에 있어서의 北韓의 領海의 限界	22
4. 南北韓의 法的 關係와 西海 5島의 法的 地位	24
(1) 南北韓의 法的 關係와 北韓의 法的 地位	24
(2) 西海 5島의 法的 地位	26
5. 休戰의 終了 및 休戰協定の 効力問題와 關聯된 西海 5島의 問題	29
(1) 休戰의 終了問題	29

(2) 國際聯合軍司令部 (U.N.C) 의 解體와 休戰協定の 効力問題	32
6. 北傀集團의 經濟水域 및 軍事警戒水域의 設定과 西海 5 島의 問題	40
(1) 北傀의 經濟水域 設定	40
(2) 北傀의 海上 軍事 境界線の 設定과 西海 5 島 의 問題	43
(3) 北傀의 海上군사境界線 設定이 現 休戰體制 및 西海 5 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問題)	46
7. 結論的 考察 및 對策	51

1. 序 論 - 問題의 提起

北韓은 休戰이 成立된 이후 20年間 慣例的으로 지켜오던 우리의 西海「北方警備限界線」(NLL : Northern Limited Line)을 1973년 10月부터 侵犯하기 始作하여 그 以來 西海에서 一聯의 挑發行爲를 계속해 왔다. 즉 同月 23日부터 北韓은 白翎島, 大靑島, 小靑島, 延坪島, 隅島등 西海 5個 島嶼의 海域에서 우리의 北方警備限界線을 越線하는 挑發行爲를 恣行함으로써 同 海域에서 緊張을 高潮시켜 왔다.

이에 대한 우리側 抗議에 北韓側은 오히려 우리側이 그들의 領海를 侵犯하고 있다고 主張했는가 하면, 1973年 12月 1日 軍事停戰委員會 第346次 會議에서는 韓國側이 近來에 와서 海上侵犯을 恣行하고 있다면서 「停戰協定 第2條 13項 (나)目에는 白翎島, 大靑島, 小靑島, 延坪島, 隅島의 5個 島嶼가 北韓軍 統制下에 있는 海域에 位置하고 있으므로 이들 우리側(北韓側) 領海에 있는 5個 島嶼에 出入할 때는 事前 承認을 받아야 하며 違反할 때는 適當한 措置를 받을 것」이라고 強辨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主張은 上記 5個 島嶼가 國際聯合軍 統制下에 있다는 것은 認定하나 그 島嶼들을 둘러싼 隣接 海域은 그들의 領海이므로 이곳을 通行할 때는 그들의 統制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1973年 12月 17日 北韓은 中央通信을 통하여 最近 韓國側의 西海에서의 海軍活動에 대해 猛烈히 非難하는 聲明을 發表하였다. 이 聲明에서 北韓은 韓國側이 甕津半島 앞 바다에 高速로켓트艦을 비롯한 各種 海軍艦艇들을 集結시켜 軍事的 挑発을 敢行하고 美軍은 偵察機를 動員하여 甕津半嶼, 고성, 평강, 연안 一帶를 侵犯하였으며 韓國은 또한 12月 15, 16日 北韓側 沿海인 등산곶 앞 바다에 驅逐艦과 警護艦을 侵犯시켜 10餘日間 都合 80餘件의 違反行爲를 일으켰다고 主張하였다. 또 이 聲明에서 北韓은 이와 같은 行爲가 韓半島에서 緊張狀態를 激化시키고 戰爭 雰圍氣를 鼓吹시키는 行爲라고 하면서 그들의 艦艇이 우리側의 西海 北方警備 限界線을 侵犯한 것은 그들의 沿海에 대한 正常的 巡察任務이기 때문에 韓國領海에 대한 侵犯이 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聲明은 西海事件에 대한 最初의 公式聲明으로서 休戰協定上 不明確한 西海 5個 島嶼의 海域을 그들의 沿岸海라 하여 그들의 管轄下에 두려고 劃策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休戰協定 第2條 13項 (나)目에는 黃海道와 京畿道の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들 중에서 白翎島, 大靑島, 小靑島, 延坪島 및 隅島의 5個 島嶼는 國際聯合軍의 「軍事統制下」 (under the military control)에 둔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이 5個 島嶼의 隣接 海域에 관해서는 아무런 明示的 規定이 없으므로

로 바로 이러한 休戰協定上의 虛店을 利用하여 北韓은 이들 5個 島嶼의 海域을 그들의 沿岸海라 하여 이들 海域에 대한 管轄權을 主張함과 동시에 지난 20年間 그들 스스로가 慣例上 認定해온 北方 警備限界線을 故意的으로 破棄하고 韓国側의 이들 5個 島嶼에의 通行에 대해 그들의 事前 承認등의 統制權을 行使하려고 하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休戰協定은 陸地에만 軍事分界線을 設定하고 바다에서 이를 定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東海에서는 「軍事分界線 延長線」(Military Demarcation Line Extended)이 우리 側과 北韓側에 의해 慣例적으로 認定돼 왔다. 그에 대해 西海에서는 아무런 軍事分界線이 없고 다만 休戰協定이 成立된 後 國際聯合軍과 韓國이 共同으로 設定한 西海 5島와 甕津半島에 沿한 北韓의 沿岸과 의 中間線인 北方警備限界線(NLL)이 있어 이 限界線이 20年間 北韓에 의해 慣例적으로 지켜져 왔다. 그러다가 돌연 北韓은 1973年 10月 23日부터 이 限界線을 侵犯하기 始作했으며, 이윽고 同年 12月 1日 軍事停戰委員會 第346次會議에서 西海 5島의 海域에 대한 領海權을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休戰協定에서 는 西海 5島를 國際聯合軍司令官의 軍政統制下에 두며(第2條 13項 2目), 서로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地域에 接統하고 있는 海域을 尊重하고 如何한 封鎖도 하지 못하며(第2條 15項), 또 서로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 및 이 地域에

隣接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第2條 16項)고 規定했을 分
西海 5島 周辺 海域의 管轄權에 대해서는 具體적으로 規定한 바가
없으므로 結局 오늘날 西海 5島를 둘러싼 問題가 發生하게 된
것이다. 실상 이 西海 5島는 北韓의 沿岸으로부터 6~12海里
거리 에 位置하고 있다. 그래서 北韓은 이들 섬의 海域은 그들의
領海의 範圍(12海里)에 包含되므로 이들 섬을 通行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統制를 받아야 한다고 主張하는바 이는 위의 休戰協定
第2條 15項의 規定에 비추어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 休戰體制의 破壞를 試圖하려는 重大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北韓은 지난 7月1日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하고 이
를 8月1日부터 實施하고 있다. 지난 6月21日 北韓의 「中央人
民委員會」는 經濟水域 200海里 設定에 관한 政令을 採択하였는데
이 政令에 의하면 經濟水域은 領海의 基線으로부터 起算하고 2個國
간의 重複水域에는 半分線(中間線)을 挾하며 水域안의 生物 및
非生物資源에 대해 主權을 行使하고 그들의 事前承認 없이 外國人,
外國船舶, 外國抗空機가 水域안에서 漁撈, 施設物 設置, 探查, 開發을
하는 등 그들의 經濟活動에 障礙가 되는 行爲들과 海水 및 大氣汚染
을 비롯하여 人命과 資源에 害를 끼치는 行爲들은 禁止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內容의 經濟水域 200海里 設定에 관한 政令을 採択하여
이를 지난 8月1日부터 實施함과 同時에 北韓은 「海上軍事境界線」

을 設定하여 同日字로 施行하고 있다. 同日字(8月1日)의 北韓 人民軍最高司令部의 名義로 된 海上 軍事境界線 設定에 관한 發表에 따르면 北韓은 「우리의 經濟水域을 믿음직하게 保護하며 民族的 利益과 自主權을 軍事的으로 徹底히 지키기 위하여 軍事境界線을 設定한다」고 宣言하면서 軍事境界線은 東海에서는 領海 起算線으로부터 50海里로 하며 西海에서는 200海里 經濟水域 境界線으로 하고 軍事境界線 區域의 水上, 水中, 空中에 있어서 外國人, 外國軍艦船, 外國軍用飛行機는 北韓과 事前協議 或은 承認下에서만 軍事境界線 區域에서 航海 및 飛行할 수 있고, 이 區域에서 民間船舶과 民間飛行機들에 의한 軍事的 目的을 가진 行動과 經濟的 利益을 侵害하는 活動을 禁止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北韓은 一般 國際法上 認定될 수 없는 海上軍事境界線을 一方的으로 設定하여 이 境界線 區域에서는 民間船舶과 民間抗空機의 通行마저 統制하겠다고 闡明함으로써 事實上 領海에서 보다도 더 排他的인 管轄權을 行使하겠다는 意圖를 드러내고 있다. 아직 北韓의 海上軍事境界線이 어떻게 適用되는 것인지 具體적인 內容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北韓이 西海 5島 周邊의 海域을 이 軍事境界線 속에 包含시키는 경우 이 島嶼들에 對한 民間航路가 封鎖

될 憂慮가 없지 않다. 만일 北韓이 이 軍事境界線設定을 契機로 西海 5島에 대한 通航을 封鎖하거나 어떤 形態로든 統制한다면 이는 休戰 以後 20 餘年間 遵守되온 休戰體制와 이에 따른 慣例를 破棄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이다. 어쨌든 北韓의 200海里 經濟水域 實施만해도 西海 5島를 둘러싼 紛糾을 再發시키고 우리 漁船의 安全操業을 威脅하는 것인데 여기에 一方的인 軍事境界線까지 設定한 것은 西海 五島에 대한 새로운 紛爭을 惹起할 危險要因을 加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西海 5島를 圍繞한 問題에 대한 國際法的 考察을 해보기로 한다.

2. 休戰의 一般的 性質과 韓國休戰協定の 法的 性格

(1) 休戰의 一般的 性質

한마디로 休戰이란 交戰當事者간의 合意에 依한 敵對行為의 一時的 停止를 말한다. 1907年 Hague의 「陸戰의 法規 및 慣例에 關한 條約」의 附屬規則(通稱 「陸戰規則」) 第36條에도 「交戰當事者의 合意에 依한 休戰으로 作戰行動은 停止된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와같이 傳統 國際法上의 休戰은 단지 敵對行為(戰鬪行為)의 停止를 意味하는 暫定的 性質의 것으로서 「戰爭의 終了」를 뜻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그런데 廣義의 休戰에는 停戰(suspension of arms, truce), 部分的 또는 局地的 休戰(partial or local armistice), 一般的 休戰(general armistice) 등 세가지의 類型이 있다. 停戰과 部分的 休戰은 一般的 休戰과 달리 全軍 및 全戰鬪地域에 걸친 敵對 行為의 停止의 效果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適用範圍가 다같이 局限되는데 이 점에서 보다 小範圍의 效果를 갖고 또 대체로 有效期間도 짧은 것이 停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一般的 (또는 全般的) 休戰은 全軍 및 全戰鬪地域에 걸친 敵對行為의 停止를 意味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戰爭全體에 影響을 미치는 政治的 重要性을 갖는다. 그리고 一般的 休戰은 흔히 戰爭의 事實上

의 終了 또는 講和豫備行爲로서의 政治的 效果를 갖는다. 勿論 韓国の 休戰은 이러한 一般的 休戰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그 政治的 意義가 큰 것이다.

休戰의 一般的 性質에 關하여 法的으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休戰의 效果, 즉 休戰中の 時期가 어떠한 法的 地位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傳統的 國際法理論의 代表格인 Oppenheim에 依하면 一般的 休戰期間中 交戰当事者間 및 交戰國과 中立國과의 사이에는 단지 敵對行爲의 停止 以外的 모든 點에 있어서 여전히 戰爭의 諸條件이 繼續한다고 한다. 그래서 國際法上 및 國內 公法上의 諸關係가 休戰期間中에는 戰時關係로 規定하여 그 期間이 아무리 長期에 이르지라도 그 동안의 法的關係는 戰時法의 適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傳統的 理論에서는, 休戰은 事實上 및 法律上의 어느 意味에서도 戰爭狀態를 終結시키지 않는 것으로 把握하는 것이 實交國際法上의 原則이라고 보는 것이다. 大多數의 現代 國際法學者들도 대체로 休戰에 關한 이같은 傳統的 理論을 支持하고 있다.

이에 대해 現代的 理論의 代表格인 stone은 一般的 休戰에 關한 現代的 傾向을 分析하고 休戰은 그것이 一般的 休戰인 한 단순한 敵對行爲의 一時的인 停止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一種의 「戰爭의 事實上의 終結」(de facto termination of war)의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며, 休戰協定은 戰爭終結의 한 方式으로서 當事

者가 그 協定을 實施하는 狀況에 따라 講和條約의 締結 없이도 戰爭終結의 效果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한다. 그 예의 하나로써 Stone 은 韓國休戰에 言及하여 그것은 一般的인 休戰으로서 그 協定의 前文에는 休戰의 意圖가 「純軍事的」(purely military) 性質의 것이라고 明示되어 있으나 역시 「戰爭」(協定文에는 「戰爭」이라는 用語는 없고 Conflict, hostilities, act of armed force 라는 用語가 使用되고 있다)의 事實上의 終結에 該當하는 것이라고 論하고 1907年의 Hague 陸戰規則 第36條에서부터 第41條에 이르는 休戰에 關한 規定들은 이와같은 傾向에 비추어 適応과 調節을 要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이와같은 一般的 休戰의 現代的 傾向을 보고 Levie는 「平和回復에로 引導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의 一般的 休戰의 現代的 慣行에 있어서 增大되고 있는 그 重要性은 講和의 豫備行爲(preliminaries of peace)와 類似한 것으로, 또한 나아가 最終的인 講和條約으로까지 歸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一般的 休戰의 政治的 重要性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Israel 과 Arab간의 休戰協定을 例로 들면서 지금까지의 經過에 비추어 이러한 一般的 休戰協定은 戰爭의 事實上의 終結마저도 이룩하지 못하고 있음은 明白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見解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차례의 全面的 戰鬪再開를 보여준 中東事態에 依하여 더욱 그 妥當성이 實証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Vietnam 休戰의 경우에도 그대로 상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休戰은 戰爭終結의 效果를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Stone의 實在的 考察에 따라 一般的 休戰으로서 長期間에 걸치는 경우 그것이 때로는 戰爭의 事實上的 終了를 結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法的으로는 休戰 自體가 戰爭狀態의 終結, 즉 平和狀態의 回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休戰과 講和사이에 時間的 거리가 길어지고 休戰이 平和로 轉換될 可能性이 稀薄할 경우(韓國休戰의 例에서 보듯이)에 있어 休戰期間의 法的 地位에 關한 傳統的인 法制度에 對해서 再考할 必要性이 있게 된다. 즉 休戰期間이 短期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期間을 戰時로 보는데 問題가 없으나, 그 期間이 長期化하는 경우에는 國民의 生活과 國家의 活動에 많은 支障과 負擔이 招來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現行法制度에서 오는 重大한 不合理을 피하기 위해서 戰爭과 平和사이에 中間的인 어떤 새로운 法制度를 設定할 必要가 있다는 見解에는 充分한 根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國民이나 國家가 戰爭狀態에 얽매어 몇 年이고 苦痛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現實에 맞지 않는 일이다.

(2) 韓國休戰協定の 法的 性格

韓國休戰은 一般的(全般的) 休戰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갖는

政治的 重要性은 看過될 수 없다. 1953年7月27日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北韓人民軍總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여 調印된 韓國休戰協定은 前文에서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韓國動亂을 停止시키기 위하여 또한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韓國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의 武裝行爲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休戰을 確立할 目的으로」協定을 締結하는데 合意한다는 것을 宣言하고, 「이(休戰)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속하는 것」이라고 闡明하고 있다.

이 協定 第4條 60項은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保障하기 위하여 雙方軍司令官은 雙方의 關係各國政府에 休戰協定이 調印되고 効力を 發生한 後 3個月內에 각기 代表를 派遣하여 雙方의 한 級 높은 政治會議를 召集하고 韓國으로부터의 모든 外國軍隊의 撤收 및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등의 問題를 協議할 것을 이에 建議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休戰協定 속에 韓國問題에 대한 政治的 解決을 위한 會議의 開催를 豫定한 이 條項은 이 協定의 政治的 重要性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1954年의 韓國問題에 관한 Geneva 政治會談은 失敗로 끝났으나 그것은 바로 이 條項을 根拠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協定은 第5條 61項에서 「本休戰協定에 대한 修正과 增補는 반드시 敵對雙方司令官들의 相互 合意를 거쳐야 한다」

고 하고 62 項에서 「本休戰協定の 各條項은 雙方의 共同으로 接受하는 修正 및 增補 또는 雙方의 政治的 水準에서 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適當한 協定中의 規定에 의하여 明確히 代置될 때까지는 계속 効力을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韓國休戰協定에는 休戰의 期間에 관하여 明示的인 規定을 두지 않고 있다. 休戰協定에 期間이 정해진 것은 그 期間의 滿了와 同時에 또 解除條件이 붙은 것은 그 條件의 發生과 同時에 特別한 通告를 要하지 않고 當然히 休戰은 終了한다. 그런데 最近의 傾向을 보면 休戰協定에 休戰期間에 관한 約定이 없으며 또한 敵對行爲의 再開에 관해서도 아무런 規定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같은 休戰協定の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当事者의 一方이 언제나 自己가 選択한 時期에 敵對行爲를 再開할 수 있다고 解釋된다. 1907 年の Hague 陸戰規則도 第36 條에서 休戰에 그 期間이 規定되지 않는 경우에는 交戰當事者는 언제나 또 다시 敵對行爲를 開始할 수 있고, 단 休戰條件에 따라 所定의 時期에 그 뜻을 相對方에게 通告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한편 休戰協定도 條約의 一種이므로 條約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終了한다고 할 수 있다. 그 終了를 가져오는 原因으로서 重要한 것은 協定の 違反이다. 위의 陸戰規則은 第40 條에서 当事者 一方에 重大한 休戰協定 違反이 있을 경우에는 他의 一方은 協定 廢棄의 權利를 가질 뿐 아니라 緊急한 경우에는 즉각 戰鬪를 開始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에 관하여 Oppenheim 은
① 重大하지 않은 違反에 있어서는 他의 一方은 協定廢棄權을
갖지 않으며, ② 重大한 違反의 경우에는 相對方은 廢棄權을 가
지나 原則적으로 通告없이 戰鬥을 開始할 權利까지 갖는 것은
아니며, ③ 즉각 戰鬥을 開始할 수 있는 경우는 緊急時에 限한
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어떠한 客觀的 基準에 의하
여 「重大한 違反」과 「緊急한 경우」를 判定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有權的 判定機關이 없는 한 그에 대한 判定은 当事者
(違反 相對國)의 主觀的 裁量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韓國休戰協定에는 違反으로 인한 廢棄에 관하여 아무런 規定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問題의 解決은 결국 國際法의 一般原
則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北韓側은 休戰協定을
빈번히 違反해 왔다. 특히 北韓側은 軍備增強禁止에 관한 協定
第2條 13項 2目を 違反하여 不斷히 軍備增強을 계속하였다. 이
에 대해 國際聯合軍司令部는 이 條項은 共產側이 全적으로 違反하
였으므로 相對的인 軍事的 均衡이 回復될때까지 이 條項上의 義務
에서 당연히 免除되는 것으로 看做한다고 하여 이 條項의 廢棄

意思를 共產側에 通告함으로써 (1957年6月21日) 軍備增強禁止를 規定한 이 條項은 死文化되어 그 効力を 喪失하고 말았다. 그 밖에 北韓側에 의한 武裝共匪浸透 (1.21事態, 蔚珍, 三陟地區 事態 등), 非武裝地帶 (D.M.Z) 內的 地下「터널」 構築, 海上에서의 武力 挑發 등 休戰協定違反事例은 協定全體를 無効化할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休戰協定은 北韓側의 違反과 그에 대한 國際聯合軍側의 協定 一部條項의 廢棄에도 不拘하고 어느 一方 當事者가 協定全體의 廢棄를 明示적으로 宣言하거나 敵對行爲를 再開할 때까지는 協定の 効力은 계속하는 것으로 看徵된다. 韓國休戰協定은 그것이 豫定하고 있는 政治合議에서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이 達成되었을 때 또한 終了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協定の 終了는 이 경우만을 想定하고 있다.

3. 休戰協定과 西海 5島에 관한 問題

(1) 休戰協定上 西海 5島에 관한 規定

休戰協定の 締結過程에 있어서 軍事分界線의 設定問題에 관하여 北韓側은 38度線을 主張하고 國際聯合軍側은 現 接戰線(line of contact)을 主張하여 結局 軍事分界線(陸地)은 國際聯合軍側의 要求대로 現 接戰線에서 固定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海上分界線에 관해서는 北韓側은 12海里를 國際聯合軍側은 3海里를 主張하였으나 끝내 合意를 보지 못하고 그 결과 協定은 第2條 15項에서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地域에 接統하고 있는 海域을 尊重하며」(..... shall respect the waters contiguous to the land area of korea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opposing side) 「.....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고만 規定하게 되었다. 비록 協定에서는 規定하고 있지 않으나 東海岸에는 「軍事分界線 延長線」이 있어 이것이 雙方에 의해 默示的으로 認定되어 왔다. 그러나 西海岸에는 아무런 軍事分界線이 없다.

한편 休戰協定을 論議할 때 後方 島嶼에서의 軍隊撤収 問題와 島嶼의 管轄問題가 論議의 對象이 되었는데, 國際聯合軍側은 西海 5個 島嶼群을 除外한 北韓의 모든 後方島嶼(國際聯合軍이 占領하고 있는)에서 軍隊를 撤収키로 하고 西海 5個島嶼群들만 그의

統制下에 두기로 하였다. 國際聯合軍側은 이 5個 島嶼는 過去 (6.25 動亂 以前)부터 大韓民國의 領土로서 그의 統治下에 있었고 또 거기에 大韓民國의 住民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管轄下에 두어야 한다는 主張과 그리고 이 5個 島嶼群들은 우리 쪽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 北韓에 대해 威脅을 줄 수 없는 位置에 놓여 있고 특히 北韓의 陸地와 이들 島嶼 사이의 海域은 武力衝突의 緩衝役割을 할 수 있어 北韓에 威脅을 주지 않는다는 理由를 들어 이 5個 島嶼群들을 國際聯合軍의 軍事統制下에 두는데 合意를 보았던 것이다. 이에 관한 條項인 協定 第2條 13項 2目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本休戰協定이 効力を 發生한 후 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島嶼 및 海域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量, 補給物資 및 裝備을 撤去한다. 上記한 「沿岸島嶼」 (Coastal islands)라는 用語는 本休戰協定이 効力を 發生할 때에 비록 一方이 占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黃海道와 京畿道の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島嶼중에서 白翎島 (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 (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 (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 (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 (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 (island groups)을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島嶼들은 北韓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島嶼들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둔다.

그리고 協定에 添附된 附錄 第3의 地圖에서의 註釈에 따르면, 上記 境界線(黃海道와 京畿道の 道界線)의 目的은 다만 韓國 西海岸 島嶼들의 統制를 表示하는 것으로서 이 線은 아무런 다른 意義가 없으며 이에 따른 意義를 덧붙이지 못하고 (註1), 또한 各 島嶼群들을 둘러싼 長方形의 區劃目的은 다만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두는 各 島嶼群들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이 長方形의 區劃은 아무런 다른 意義가 없으며 이에 따른 다른 意義를 添附하지 못한다(註2)고 되어 있다. 여기서 黃海道와 京畿道の 道界線은 西海 5個島嶼群들의 統制權을 條文化할 때에 하나의 reference line으로 삼은 것으로 아무런 다른 意味가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는만큼 이 線이 西海에서의 軍事分界線으로 代用될 수 없음은 勿論 西海 5島 周邊 海域에 있어서의 管轄海域의 境界線이 될 수 없음은 自明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協定에서는 西海 5島가 國際聯合軍의 軍事統制下에 있다는 것과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地域에 隣接한 海域을 尊重하고 如何한 封鎖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規定하고 있을 뿐 西海 5島 周邊海域의 管轄權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明示的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西海上에서의 軍事分界線 및 5島 周邊海域의 管轄權에 관한 協定上의 明文 規定이 없으므로 結局 오늘날 西海 5島의 隣接海域에 대한 管轄權의 問題가 提起될 수 있는 것이다.

(2) 西海 5島海域에 대한北韓의主張과 休戰協定

1953年 休戰과 同時에 國際聯合軍側은 西海 5島와 北韓의 甕津半島에 沿한 島嶼들과의 中間線을 택하여 이른바 「北方警備限界線」(NLL)을 設定하였는데, 이것은 北韓側과 衝突을 피하고 休戰協定을 持續하기 위한 하나의 Control line이다. 北韓側도 休戰以後 20年間 이 限界線을 慣例적으로 遵守해옴으로써 이 線은 休戰體制의 一部로 構成되어 왔다. 그런데 北韓側은 前述한 바와 같이 1973年 10月 23日부터 이 限界線을 侵犯하기 始作했으며 특히 同年 12月 1日 第346次 軍事停戰委員會 本會議에서 西海 5島가 國際聯合軍側의 統制下에 있다는 것은 認定하나 그것을 둘러싼 一帶의 海域은 北韓의 領海(沿岸海)이므로 이들 島嶼에 運航하는 補給船등 모든 船舶은 北韓側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이 海域을 運航하는 船舶에 대해서는 檢河 檢索을 實施하겠다고 主張하여 이른바 西海事件을 誘發시켰던 것이다.

第346次 軍事停戰委員會 本會議에서의 이와 같은 北韓의 主張에 대하여 國際聯合軍側은 西海 5島의 一帶 海域이 北韓의 領海라는 것은 休戰協定을 비롯한 어떤 規定에도 없다고 하면서 그를 一蹴하였지만, 端的으로 그러한 北韓의 主張은 休戰協定과 國際法을 無視한 挑發적인 行爲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側은 西海 5島의 周辺海域이 그들의 領海라는 主張의 論拠로 休戰協定 第2條 13項 2目を 들고 있으나 이 條項에서는 5島의 周辺海域에 대하

여 아무런 規定도 하고 있지 않다. 이 條項에서는 6.25 動亂 前의 黃海道와 京畿道の 道界線을 中心으로 그 以南의 島嶼들은 國際聯合軍側의 軍事統制下에 두고 그 以北과 以西의 島嶼들(5 個島嶼를 除外)은 共產側의 軍事統制下에 둔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海域에 대해서는 아무런 言及도 없다.

이처럼 海域에 대한 明文規定이 없는 것을 理由로 北韓側은 5 島의 周辺海域이 그들의 領海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北韓側이 主張하는 바가 이러한 論理에 立脚한 것이라면, 反對로 西海 5 島 海域을 包含한 그 北쪽의 北韓 陸地에 隣接한 38 度線까지의 海域 全體가 國際聯合軍側의 管轄下에 있다는 論理도 成立한다. 왜냐하면 陸地에는 軍事分界線이 있으나 바다에는 없기 때문에 6.25 動亂 前의 管轄權 限界인 38 度線까지의 海域은 國際聯合軍側의 管轄下에 있고 또한 協定上 黃海道와 京畿道の 道界線 以北과 以西의 島嶼중 5 個 島嶼를 除外하고는 모두가 共產側의 軍事統制下에 두도록 되어있는 것은 事實이나 周辺海域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으므로 이 海域은 계속 國際聯合軍側의 管轄下에 있다는 主張도 可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協定 第2條 13 項 2 目을 論拠로 하여 北韓側이 西海 5 島의 海域을 그들의 領海라고 主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理論이다. 또한 그것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 接統하고 있는 海域을 尊重해야 한다는 協定 第2條 15 項의 規定에도 違背되는 것이다.

(3) 西海 5島 海域에 대한 北韓의 主張과 一般國際法

(가) 北方 警備限界線과 休戰體制 形成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國際聯合軍側은 38度線까지 西海 全域을 그의 管轄下에 있다고 主張할 수 있는 論拠가 明白함에도 불구하고 休戰과 同時에 西海 5島와 北韓의 陸地 사이의 海域에 그 中間線인 北方 警備限界線 (5島로부터 3海里 北端)을 設定하여 北韓과 衝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Control line으로 삼아 왔는데 이 限界線에 대해서는 그것이 設定된 後 20年間 北韓側에 의해서도 아무런 異議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理論上 이 限界線은 休戰體制의 一部를 形成하는 것으로 雙方의 默示的 合意가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西海 5島와 關聯한 이러한 現狀은 休戰協定 自體와 同一한 効力을 갖는 慣習法으로 成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근거에서 北韓은 이를 遵守해야 할 義務가 있으며 現狀의 休戰體制를 尊重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北韓이 北方 警備限界線을 侵犯하고 西海 5島 周邊海域의 領海權을 主張한다는 것은 바로 現 休戰體制를 打破하려는 故意的인 戰略的 挑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나) 西海 5島의 國際法上的 地位

말할 것도 없이 西海 5島는 大韓民國의 領土로서 國際法上 島嶼의 地位를 가지며 따라서 그 自體 領海를 갖는다. 國際法上으로 島嶼 (Islands)는 水域으로 둘러싸인 自然的으로 形成된 陸地로서 滿潮

때에 水面위에 突出되어 있어야 하며, 따라서 干出地(Low-tide elevations)나 岩礁(rocks)는 島嶼라고 할 수 없다. 1958年의 「領海 및 接統水域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은 第10條 1項에서 「島嶼는 水域으로 둘러싸이고 形成된 陸地의 地域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西海 5島인 白翎島(面積 44.1 *km*², 人口 7,900餘名), 大靑島(12.6 *km*², 2,000餘名), 小靑島(3 *km*², 800餘名), 延坪島(7.1 *km*², 2,300餘名), 隅島(0.3 *km*²)가 一般國際法上 島嶼임이 明白하다.

그리고 「島嶼도 그 自體의 領海를 가진다」(Every island has its own territorial sea)는 것은 많은 學說과 判例에 의해서 支持되어 왔음은 勿論 一般國際法上 確立된 原則이다. 위의 「領海 및 接統水域에 관한 協約」은 第10條 2項에서 「島嶼의 領海는 이 協約의 規定에 따라서 測定한다」고 하여 島嶼도 領海를 갖는다는 것을 明文化하고 있다. 따라서 西海 5島도 各各 그 自體의 領海를 가진다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여기서 北韓이 西海 5島의 周辺海域을 그들의 領海라고 主張한다는 것은 얼마나 一般國際法原則을 無視하는 行爲인가를 알 수 있다. 結局

北韓의 主張은 一般國際法上 確立된 原則에 비추어 許容될 수 없
는 것이다.

(다) 西海 5島海域에 있어서의 北韓의 領海의 限界
한편 서로 對向하고 있거나 隣接하고 있는 重複된 領海의 境界
는 合意에 의해 劃定할 수 있으나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等距
離 原則」 (Principle of equidistance)에 따라 劃定한다.

Brownlie에 의하면 이 原則은 常識에 基礎한 것이며 또 法의
一般原則이라고 한다. 이 等距離 原則은 위의 「領海 및 接統水
域에 관한 協約」에서 採択되어 그 第12條 1項은 「二個國의
海岸이 서로 對向하거나 隣接하고 있는 경우에는 兩國중 어느 國
家도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 兩國의 各自의 領海의 範圍를 劃定
하는 基線上의 最短距離의 地點에서 同一한 距離에 있는 地點을
連結하는 中間線(median line)을 넘어 領海를 擴張하지 못한다」
고 規定하고 있다. 즉 重複된 領海의 境界線은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 中間線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西海 5島의 領海와 甕津半島에 沿한 北韓의 領海는
서로 重複되어 있는 만큼 그 境界는 中間線으로 해야 하며, 北韓은

그 中間線을 넘어 領海를 擴張할 수 없다. 北韓은 領海의 範圍를 公式的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이제까지의 實踐을 통해 그 範圍가 12海里라고 알려져 있다. 北韓의 領海가 12海里라고 할 때 北韓地域으로부터 6~12海里에 位置하고 있는 西海 5島는 모두 그 領海의 範圍에 包含된다. 그래서 北韓은 이 5島의 周辺海域은 그들이 領海라고 主張했는지 모르지만, 西海 5島도 엄연히 自體의 領海를 가지는 만큼 北韓의 領海權은 어디까지나 西海 5島의 領海와 北韓의 領海와의 中間線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다.

4. 南北韓의 法的 關係와 西海5島의 法的 地位

(1) 南北韓의 法的 關係와 北韓의 法的 地位

오늘날 法的으로 大韓民國과 北韓과의 關係가 國家間의 關係가 아니라 같은 말할 나위도 없다.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이나 1973年 6.23 特別宣言이 發表된 後에도 北韓의 法的 地位는 國家가 아님이 分明하다. 7.4 共同聲明을 發表하면서 韓國政府는 그것이 北韓에 대한 어떤 法的 地位의 認定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明白히 하였다. 또한 韓國 政府는 6.23 宣言을 公表함과 同時에 「對北韓關係 事項은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의 過渡期的인 暫定的 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한다」는 明示的 留保를 붙였고 이에 결 들어 「우리는 休戰線 以北地域을 事實上 支配하고 있는 共產政權이 있다는 現實을 認定한다. 이것을 國際社會에서는 소위 「두개의 韓國」이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로서는 民族的 統一의 念願에 비추어 北韓을 「하나의 國家」로 認定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公式的 解説도 덧붙였다. 그리고 當時 國務總理(金鍾泌)는 國會에서의 質疑에 대한 答辨에서 獨逸의 경우와 區別하여 「獨逸은 한 民族 두 國家, 두 政府이지만, 우리는 한 民族, 한 國家, 두 政府라 表示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南北韓의 法的 關係를 보면, 6.23 宣言이 결코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明示적으로 留保하고 있는 限, 그것으로 默示的 方法에 의한 國家承認의 效果가 發生하지 않는다.

國際法制度에 있어서의 默示的 方式에 의한 承認은 本質上 承認 意思에 疑心の 餘地가 없을 경우에 限하여 즉, 反對의 意思表示가 없을 때에 限하여 客觀的 行態를 통하여 間接으로 承認의 效果가 推定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6.23 宣言은 對外的 關係에 있어서는 北韓이 外交能力을 갖는 別個의 國際法 主體로서 國際聯合에의 加入을 認定하나 對內的 關係에 있어서는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고 大韓民國의 「合法政府」(de jure government)에 대한 「地方的 事實上の 政府」(Local de facto government)로서 默示적으로 同 宣言의 公表라는 客觀的 行態를 통하여 承認한 것이다. 따라서 同 宣言 以前에 있어서의 北韓의 地位는 大韓民國(政府)과의 關係에 있어서 反國家團體 즉, 叛亂團體(insurgency) 以上の 것이 아니었다. 大韓民國政府가 休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던 理由중의 하나도 이 協定에 署名함으로써 默示적으로 當時의 北韓叛亂團體를 交戰團體로서 承認하게 되는 것을 忌避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解釋된다. 國際法 制度上 「地方的 事實上の 政府」란 制限的 國際法主體性을 갖는 「交戰團體」(belligerency)로서의 地位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暫定的 地位임을 本質로 한다.

(2) 西海 5島의 法的 地位

周知하는 바와같이 1945年 38度線이 設定되어 韓半島가 南北韓으로 兩斷되자 38度線 以南에 있는 西海 5島는 同年 8月 19日 부터 美軍政下에 놓여 있다가 1948年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同時에 大韓民國의 領土로서 大韓民國의 行政管轄權 밑에 있게 되었다.

이 5島는 6.25動亂 當時 暫間 敵(北韓)의 支配下에 있다가 收復되어 1951年 10月부터 또다시 大韓民國의 行政管轄地域이 되었다. 지금 이 5島는 行政区劃上 京畿道 甕津郡에 編入되어 있으며 모두 9個 面으로 이루어진 內務部의 行政管理地域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5島가 大韓民國의 合法的인 領土라는 것은 論議의 餘地가 없다. 비록 休戰協定에 依해 38度線 以南의 大韓民國의 領土인 甕津半島와 그 附近의 島嶼들이 北韓의 占領下에 놓여 있으나, 西海 5島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休戰協定에 依해 國際聯合軍 管轄下에 두게 된 만큼 北韓은 이 5島에 대한 어떠한 法的 權源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은 甕津半島와 그 附近의 島嶼들을 領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休戰協定에 依하여 交戰者로서 그것을 占領 管理하고 있는 것이다. 現行 國際法은 一方의 交戰當事國이 他方의 交戰當事國의 領土를 占領하고 있을 때는 占領國에게 占領에 必要한 軍政權만을 認定하고 領土의 主權行使는 認定하지 않는다. 軍政權은 永久的인 것이 아니고 軍政時만 行使할 수 있는 臨時的인 權利

(transient right)이다. 또 現行 國際法은 交戰狀態가 繼續되는 限 占領國으로 하여금 占領地를 占領國의 自己 領土로 併合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北韓의 甕津半島와 그 附近의 島嶼에 있어서의 法的 地位는 어디까지나 交戰當事者인 占領者이므로 北韓이 占領地를 根拠로 하여 어떤 領海權 主張이나 占領地의 海域에 있어서 資源開發 및 保存을 위한 主權的 權利行使는 할 수 없다. 國際法上 沿岸國의 領海權이라든지 沿岸海에 있어서의 管轄權 主張은 沿岸國의 領土的 主權을 基盤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交戰國의 占領地에 있어서 軍政權을 占領地에만 局限시키고 있는 것이 現存 戰時國際法의 原則인데, 이는 1907年의 Hague 陸戰規則 第42條에도 規定되어 있다. 이 條項에 依하면 占領은 占領軍의 軍政體制가 樹立되고 占領軍이 軍政權을 行使可能한 地域에서만 이루어 진다고 되어 있다. 이 原則을 適用한다면, 北韓은 그들이 占領하고 있는 甕津半島와 그 附近의 島嶼에 接統하고 있는 海域에 있어서는 아무런 主權的 權利行使를 못하고 다만 甕津半島 陸地內와 그 附近의 島嶼內에서 軍政에 必要한 行政權만 行使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北韓의 甕津半島 및 그 附近 島嶼에 있어서의 法的 地位를 解釋하는 것은 北韓과 大韓民國은 아직도 國際法上 戰爭終結이 안되어 있고 交戰狀態에 놓여 있어 北韓이 交戰團體로서의 法的

地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休戰期間中 占領地域의 地位는 敵對行爲 期間中 占領地域의 그것과 同一하므로 北韓이 甕津半島와 그 附近의 島嶼를 占領하고 있는 것은 戰時占領에 該當된다.

또 領土의 歸屬問題는 休戰協定에 依해 다루어질 수 없고 오직 法的으로 戰爭을 終結시키는 講和條約(平和條約)에 依해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北韓은 甕津半島와 그 附近의 島嶼를 領土的 主權者로서 領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休戰協定에 依한 占領者로서 그것을 占領하고 있을 뿐이다.

再言하면 北韓의 甕津半島와 그 附近의 島嶼에 있어서의 法的地位는 占領者로서의 地位이며 따라서 北韓은 甕津半島와 그 附近의 島嶼에 있어서 占領者로서 軍政만 할 수 있는 臨時的인 權利를 가져 이들 海域에서 領海權이나 아무런 主權的 權利도 行使할 수 없다.

反面에 韓國의 5島에 있어서의 法的地位는 領土的 主權者로서의 地位이며 따라서 韓國은 이 5島를 中心으로 하여 領海 및 排他的 經濟水域에 對한 主權的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것이다.

5. 休戰의 終了 및 休戰協定の 効力問題와 關聯된 西海 5 島의 問題

韓半島에 있어서 現存의 休戰이 終了하는 경우와 休戰協定の 効力이 喪失 또는 消滅하는 경우, 특히 北韓이 제 30次 U.N. 總會에 提出한 memorandum에서 主張한바와 같이 協定当事者인 U.N.C의 解體에 따라 休戰協定도 그 効力이 消滅된다고 보는 境遇, 그것이 韓半島의 現狀에 어떠한 變更을 줄 것인가 하는 問題와 關聯하여 西海 5島 및 그 隣接海域의 地位에 관해서 考察하기로 한다.

(1) 休戰의 終了問題

休戰의 終了가 갖는 法的 意味(效果)는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休戰이 戰爭狀態(앞서 말한바와 같이 韓國事變을 「事實上的 戰爭」으로 보는 경우)의 終結(講和條約 또는 終戰에 관한 默示的 合意등)과 同時에 당연히 終了하는 경우로서 平時로 轉化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休戰은 戰爭終結의 豫備的 또는 過渡的 措置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 둘째는 休戰協定の 違反으로 인한 協定の 廢棄 또는 休戰期間이 設定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休戰当事者의 一方이 一方的으로 設對行爲(伐顔)를 再開하는 것등으로 因하여

休戰이 終了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前者와 反對로 戰爭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休戰協定에 効力期間이 定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의 滿了와 동시에 休戰이 終了하는데 이 경우는 둘째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戰爭終結에 관한 明示的 또는 默示的 合意없이 休戰이 終了한다는 것은 戰爭狀態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慣行은 休戰期間에 관한 約定이 없으며 또한 敵對行為의 再開에 관해서도 아무런 規定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協定아래에서는 休戰當事者의 一方이 自身이 選擇하는 敵對行為를 一方的으로 再開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1907年의 陸戰法規도 休戰協定에 期限이 (設定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敵對行為를 自由로 再開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意思를 相對方에게 通告해야 한다고 規定하였다. 최근의 休戰協定가운데 休戰의 期間에 관하여 明示的 規定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代表的인 것은 驛國休戰協定과 Israel-Lebanon 休戰協定이다. 前者는 「雙方의 政治的 水準에서의 平和的 해결을 위한 適當한 協定에 의하여 代替될때 까지」, 그리고 後者는 「當事者사이에 平和的 해결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해서 効力を 갖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休戰의 効력에 관한 驛國休戰協定 第62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本 休戰協定의 各條項은 雙方이 共同으로 接受하는

修正 및 增補 또는 雙方이 政治的 水準에서의 平和的 解決을 위
한 적당한 協定の 規定에 의하여 明確히 代替될 때까지 계속 効
력을 갖는다」 이같은 內容의 規定에 따르면 協定當事者 雙方의
合意에 의한 修正이나 增補 또는 다른 協定에 의해서 代替되지
않는 限 休戰協定の 効력이 存続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上述한
바와 같이 休戰의 期間에 관해서는 아무런 規定이 없으므로 一方
에 의한 戰鬪行為의 再開로써 언제든지 休戰이 終了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새삼 지적할 나위도 없이 그동안 共産測에 의한 休
戰協定 違反의 事例은 協定 全體를 失効化할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계속적인 軍裝備와 兵力의 大幅的인
增強은 이를 禁止하고 있는 規定(특히 第13項)을 사실상 廢棄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北韓共産集團은 이미
이른바 「戰爭準備完了」 狀態에서 언제든지 敵對行為를 再開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北傀의
一聯의 協定違反行為는 말할것도 없이 現在 休戰體制에 變更을 加
하거나 (奇襲 또는 当地域을 展開하여 一部 地域을 占領함과 같은
것) 그것은 全面的으로 打破하려는 目的을 지닌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現實로 北傀가 敵對行為(武力挑發)를 敢行하므로써 現
存의 休戰을 終了케 하는 경우 戰爭은 다시 계속되는 效果를 가지
며 따라서 現行 休戰協定은 自動적으로 그 効력을 喪失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는 戰略 및 戰術의 見地에서 보다 嚴密이 檢討
되어야 할 課題이나 쉽게 豫想할 수 있는 것은 特히 西海 5島
의 地理的 位置와 戰略的 位值에 비추어 北傀는 그 島嶼들을 第
1次的으로 노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豫想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지난 7月27日의 「韓美安保協議會共同聲明」의 第2項의
內容이다. 즉, 「兩 代表는 西海 5島를 包含하여, 大韓民國에 대
한 軍事的 威脅……」(傍點 筆者)이라고 表現하므로써 特히 西
海 5島를 摘示한 것은 그만큼 同 島嶼들의 政治的(領土的) 및
軍事的 重要性을 確認하고 그것을 北韓集團으로 하여금 새삼 認識
하게 하려는 意圖를 보여준 것으로서, 그것이 갖는 의미와 効果는
일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多大한 것이라고 評價된다.

(2) U.N.C 解體와 休戰協定の 効力問題

休戰協定도 一種의 條約이므로 協定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條約法上의 一般原則에 따라 消滅할 수 있다. 一般條約法上 條約
의 消滅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條約의 効力(拘束力과 實施力)의
消滅 즉, 條約의 終了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特히 條約當事者의 消滅로 인한 條約의 消滅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것은 韓國休戰協定の 一方 當事者인 國際聯合軍司
令官이라는 機關이 駐韓 國際聯合軍의 解體가 實現하는 경우 그것과
동시에 그 職位가 없어지면 協定當事者의 一方의 消滅로 因하여

休戰協定 自體도 消滅(終了)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一般 國際法上 條約當事國의 消滅에 의하여, 條約도 당연히 消滅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다른 主體(國家)에 의한 相統이 행해진 경우에는 非政治的 條約에 限하여 消滅하지 않고 繼承될 수 있는 것이 原則이다. 當事國이 完全히 消滅하지 않고 단순한 政府의 變更 또는 領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條約의 實施가 가능한 限, 그로 因하여 條約의 効力에는 影響(變更)이 없다.

政府의 非合法的 變更이 있는 후 新政府가 承認을 받지 못하여 外交關係가 斷切된 狀態가 繼續하는 경우에도 條約自體는 消滅하지 않고 그 効力이 一時 停止될 뿐이며 승인에 의한 外交關係의 再開와 더불어 다시 復活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와같은 一般條約法上的 原則이 위에서 假定한 韓國休戰協定の 一方 當事者의 消滅(U.N.C의 解體)의 경우에 準用될 수 있을 것인지는 疑問이다. 이 問題는 法理論의 問題에 그치지 않고 實際로 當面하고 있는 現實的 課題로서 우리의 重大한 關心事로 되어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北傀는 이미 數次에 걸쳐 U.N 總會에 U.N.C의 解體를 焦點으로한 내용의 決議案을 提出한바 있으며 특히 30次 總會에서는 우리측의 決議案과 同時에 共產側의 그것이 처음으로 通過되었다는 事實은 비록 그것이 相異한 內容의 두 決議案을 同時에 通過시킨 總會의 變則的 機能과 그 効力의 問題는 있다하더라도 우리에게 충격을 준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같은 U.N.C의 解體에 따른 休戰協定の 効力에 관하여는 여러가지의 見解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解釋論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위에서 본 一般 條約法上の 原則을 適用하여 U.N軍의 解體에 따른 協定当事者의 消滅은 休戰協定이 다른 實體(例, 大韓民國)에 의하여 相續되지 않는 限 그것의 消滅을 가져 온다는 견해로서 現實主義 내지 機能主義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說은 結論에 있어서 우연히도 北傀의 主張과 一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北傀는 現 休戰體制를 打破하기 위한 企圖로서 第30次 UN 總會에 提出한 Memorandum에서 「韓國 休戰協定の 一方 署名者인 U.N.C가 解體되는 경우에는 同 休戰協定도 역시 그 存續이 終了될 수 밖에 없다」 (If the "U.N. Command," a signatory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s dissolved, the Armistice Agreement, too, will have no alternative but to cease its existence)고 主張하였다. 이와같은 北傀의 主張은 勿論 政略的인 戰鬪로서 現行 休戰協定の 消滅을 노린 것이기는 하나 그 理論的 妥當性을 全적으로 排除할 수 없는데에 現實的인 問題가 있다.

둘째는 U.N.C는 北韓의 人民軍 最高司令部 및 中共의 人民志願軍司令部와 더불어 休戰協定에 署名한 当事者임에는 틀림없으나 同 協定締結의 主體는 國際法上으로 볼때 어디까지나 UN 自體이

기 때문이며 따라서 協定締結의 主體인 UN이 存続하는 限 그리고 UN의 權限있는 機關이 正식으로 協定廢棄를 위한 措置를 취하지 않는 限 協定の 署名当事者인 U.N.C가 해체되었다는 事實만으로 休戰協定の 効力이 喪失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U.N.C는 1950年7月7日의 安保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設置되었으며 따라서 그 設置의 母體는 安保理事會로서 그 解體 여부도 최종적으로는 同理事會만이 決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理事會에서 실사 그 해체를 決議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休戰協定の 効力이 喪失되는 것은 아니며 協定の 効力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는 이를 廢棄하기 위한 別途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째의 見解는 形式主義에 입각한 所論으로서 國家에 있어서의 그 代表機關인 政府의 非合法的 變更의 경우를 授用하는 다소 무리한 理論構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의 見解는 大韓民國도 韓國 休戰協定の 當事者로서의 地位에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것은 形式上的의 署名者는 UN 統合司令部의 最高司令官인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이나 韓國軍은 協定締結 당시 그 總司令官의 作戰指揮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休戰協定締結權도 UN統合軍을 代表하여 그 總司令官이 行使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形式上的의 署名當事者로 表記되어 있지는 않으나 實體로서의 韓國休戰의 實體的인 當事者의 地位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U.N.C가 解體되더라도 休戰当事者인 實體로서의 韓國軍 및 美軍이 存続하는 限 休戰協定の 効力は 存続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같은 見解는 休戰協定이란 一般의 條約과는 달리 雙方의 軍司令官사이에 체결되는 戰鬪의 一時的 停止에 관한 約定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休戰을 維持하는 實體가 存続하는 限 그 協定에 署名한 機關의 變更에 의해서 協定 自體가 消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實質主義에 입각한 理論이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韓國休戰協定の 締結에 始終 反對하는 입장을 취했던 大韓民國 정부는 끝내 同 協定에의 署名을 拒否했다는 事實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U.N.C의 解體問題에 따르는 韓國休戰協定の 消滅 與否의 問題에 관해서는 大別해서 세 갈래의 解釋論(學說)이 分立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問題의 複雜性和 重要性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세가지의 見解는 다같이 그 나름대로의 理論的 근거와 論理를 지니고 있으나 問題는 그 어느 것이 보다 더 現實的 妥當性和 實用성이 있느냐 하는데에 있다. 즉, 이미 본바와 같이 現實로 이 問題의 当事者인 北傀는 이미 數次에 걸쳐 U.N. 總會에 提出한 決議案과 黨에서 U.N.C의 解體와 同時에

休戰協定도 終了(消滅)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解體가 實現되는 경우 - 멀지 않는 장래에 그렇게 될 可望이 짙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관측인데 - 北傀는 現實로 그 協定の 存続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틀림없으며 또한 行動으로써 実行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둘째 또는 셋째의 解釋論으로써 對抗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北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 實際의 効用에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본다면 現實的인 觀點에서 U.N.C가 解體되는 경우 現 休戰協定에 代替할 새로운 協定の 체결이 없는 限 同 協定도 消滅(終了)하거나 적어도 일단 그 効力이 停止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對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와의 關係에서 現實로 北傀集團을 規制하고 있는 것은 明文의 休戰協定뿐이다. 왜냐하면 北傀는 반드시 一貫된 論理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南·北韓의 關係를 國家 對 國家의 關係로 보지 않고(예컨대, 6.25事變을 內亂으로 보고 韓國問題를 國內事項으로 하여 UN은 그것에 干渉할 權能이 없다고 主張함과 같이) 따라서 거기에는 一般國際法의 妥當(適用)을 承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留意해야 할 것은 共產主義諸

국에 適用되는 國際法理論(또는 法政策)에서는 原則으로 慣習의 法源性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具體적인 問題로서 우리의 一般的 見解에 의하면 西海의 「北方警備限界線」(NIL)은 休戰協定이 그것은 明示적으로 規定하고 있지 않으나 20餘年間の 지속적인 慣行에 基하여 雙方間에 默示的 合意 즉 慣習으로서 成立되었고 따라서 그것은 法으로서의 拘束性이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傳統的인 西歐的 國際法의 制度이며 理論으로서 北傀는 設사 南北間에 一般國際法이 準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認定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U.N.C의 解體로 因하여 現 休戰協定이 終了(消滅)하거나 그 効力이 停止되는 경우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北傀集團의 行動을 規制하고 拘束하는 法規(明文法이나 慣習法)가 存在하지 않는 狀態에 이르게 될 것이다. 勿論 南北間에 軍事力의 均衡이 維持되는 限에 있어서 北傀는 사실상 現狀의 全面的인 破壞나 變更을 敢行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들의 이른바 對南戰略을 수행하기 위하여 法的 規制를 받지 않는 行動의 自由를 可能한 限 行使하려 들것임에 틀림이 없다. 現在 休戰協定이 存続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北傀에 의한 4萬 以上の 協定違反行爲는 이미

協定の 重要事項을 廢棄한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으나 그러한 行爲는 여전히 協定(法) 違反行爲로 規定되고 同時에 北傀는 거의 例外없이 協定 違反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반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協定이 存続하고 있음을 實証하는 것으로서 法の 効果에 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協定이 終了한다면 北傀는 그같은 法的 規制에서 벗어나 實力이 미치는 限 할수 있는 모든 手段과 方法으로 現狀을 打破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西海 5島의 一部(특히 白翎島)를 侵攻, 占領하거나 西海 5島 周辺海域에 軍事 警戒線을 擴張함과 같은 挑戰을 敢行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 現狀을 維持해 나가려는 우리의 立場에서 과연 어떻게 對処하며 또한 어느 정도로 奮懲할 수 있을 것인지 疑問이다. 특히 이같은 問題는 미국의 對韓政 策이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하는 問題와 不可分の 關係에 있다고 보여 진다.

6. 북괴집단의 경제수역 및 군사경제수역의 設定과 西海 5島の 問題

(1) 北傀의 經濟水域設定

지난 6월 21日 北傀「中央人民委」는 200海里 經濟水域 設定에 관한 政令을 채택하고 7월 1일에는 同 政令에 의하여 經濟水域을 宣布하여 8월 1日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傀의 經濟水域에 관한 政令의 내용을 보면, 經濟水域은 領海의 起算点으로부터 200海里이며 2個国間의 隣接水域은 半分線(中間線)을 択하고, 이 水域안의 生物 및 非生物 資源 및 海底資源에 대해 自主權을 행사하여, 事前의 승인 없이 外國人, 外國의 船舶, 外國의 航空機들이 이 水域안에서 漁撈行爲, 施設物의 설치, 探查 開發등 北韓의 經濟活動에 障礙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과 海水 및 大氣汚染을 비롯하여 人命과 資源에 害를 주는 행위를 일체 禁止한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北傀의 經濟水域宣布에 대하여 우리 外務部는 7. 15일 다음과 같은 聲明을 발표하였다. 「北韓의 200海里 經濟水域 設定은 韓半島 周邊水域, 특히 隣接海上에서 生業을 위해 漁撈에 종사해 온 우리 漁民들의 操業安全을 위태롭게 하고 南北韓간에 새로운 分규를 야기시킬 危險이 크므로 우리는 北韓의 200海里 經濟水域을

인정할 수 없다.北韓의 經濟水域 設定은 南北韓 隣接水域에서 漁撈紛糾를 야기할 위험이 클 뿐만아니라 53年の 休戰 이래 韓半島에 維持돼 왔던 現狀에 變動을 招來할 우려가 있다. 만일 南北韓간에 見解差異가 있다면 우리는 7.4 南北共同声明의 정신에 입각하여 既存의 南北間 對話機構를 통해 相互 協議할 用意가 있다. 休戰線에 隣接한 東海와 西海의 海上에서 北韓의 故意的 挑發로 인해 우리의 善良한 漁民의 安全操業이 妨害될 때 우리는 우리 漁民의 安全과 조업을 保護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취할 것이다」

이와같은 外務部의 声明은 한 마디로 말해서 不必要한(또는 必要以上の) 処事라고 評價될 수 있다. 첫째로, 對外關係에 있어 國家意思를 代弁하고 代表하는 政府機關인 「外務部」가 正面으로 北傀集團을 상대로 하여 그같은 公式声明을 發表하는 것은 北傀를 叛亂團體 내지 交戰團體(地方的 事實上的 政權)와 類似한 것으로 밖에 認定하지 않는 우리의 기본적 立場과 符合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行爲(地域設定)를 「法律上」의 行위로 본다는 해석을 可能하게 하며 동시에 北傀集團의 地位를 外國에 準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暗示한 것으로 誤解될 수 있다. 둘째로, 그 內容에 있어서 그 声明이 뜻하는바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表現의 適인지는 모르나, 그 內容이 全体로서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北韓의 經濟水域設定은 ……南北韓간에 새로운 分界를 야기시킬 危險이 크므로 우리는 200海里 經濟水域을 認定할 수 없다」고

断定하면서도 「만일 南北간에 見解差異가 있다면……相互 協議할 用意在 있다」고 한 것은 前後가 調和되지 않는 論理라 할 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늘날 200海里 經濟水域의 設定은 先進諸國을 비롯한 多數國의 慣行일뿐만 아니라 海洋法會議에서도 그 法的地位에 관한 異見을 除外하고는 이미 一般的 合意에 의해서 인정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北傀의 그것을 認定할 수 없다고 斷言하는 것은 客觀的 安易性을 지닌 것이라 하기 어렵다. 그 聲明의 政治的 背景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그것이 對北 神經戰을 의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필요 이상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同 聲明과 7.22日의 南北調節委 서 側委長(代理)의 言明과 提議에 대한 北傀의 拒否反應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要컨대, 同 聲明이 對北傀 警告를 뜻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必要한 것이라면 그러한 目的에 限定한 것으로서 「現狀不可侵」을 警告하는데에 그쳐야 할 것이며, 그것은 그런대로의 現實的 妥當性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北傀는 海上의 境界線이 明示되어 있지 않음을 奇貨로 하여 經濟水域을 西海 5島周邊海域에서 적용하여 우리 漁民들의 漁撈를 妨害할 가능성이 排除할 수 없고, 또한 行動으로써 妨害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그海域의 漁民에게 威脅과 心理的 不安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附言할 것은, 다 지적하는 바이지만, 北傀의 經濟水域 設定의 一次的 目的은 後進國 一般의 資源民族主義의 思想에 입각한 이른바 南北問題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사이의 經濟的 격차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隣接水域에서의 漁業資源의 独占을 꾀한 것이며, 副次的으로는 日本과의 漁業協定の 흥정을 통해서 政治的, 經濟的 關係의 새로운 展開를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一部 여론 (특히 水產業界)은 이 時期에 우리도 領海 12海里의 宣布와 동시에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 施行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北傀와 의 關係에서는 現狀維持의 政策에서, 그리고 日本과의 關係에서는 잃는 것 (經濟水域設定으로 日本漁民에 의한 年間 約 25~30萬屯의 漁獲量을 우리가 独占, 漁獲하는 量)보다 잃는 것 (政治的 및 經濟的 協力)이 더 많을 것이라는 計算과 韓日漁業協定の 存続을 근거로 當分間 (海洋法會議에서 經濟水域制度가 確定된 때 까지) 經濟水域의 設定은 保留해 두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有利한 政策일 것이다.

(2) 北傀의 「海上軍事境界線」의 設定과 西海 5島의 문제

지난 8月1日 北傀는 소위 人民軍最高司令部의 名義로 「海上軍事境界線」의 設定을 公表하여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現休戰體制에 대한 새로운 挑戰으로서 韓半島 특히 西海周邊에 緊張과 不安을 造成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傀의 「海上軍事警戒線」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海上軍事警戒線은 東海에서는 領海起算線으로부터 50海里로 하며 西海에서는 經濟水域(200海里)의 境界線으로 한다.
- ② 軍事警戒線 안의 水上, 水中, 空中에 있어서 外國人, 外國軍用艦船, 外國軍用航空機의 行動을 禁止하여 民間船舶, 民間航空機는 事前의 合意 또는 承認아래서만 軍事警戒線 안에서 航海 및 飛行을 할 수 있다.
- ③ 軍事警戒線안의 水上, 水中, 空中에서 民間船舶, 民間航空機에 의한 軍事目的을 갖는 行動과 經濟的인 利益을 侵害하는 活動을 禁止한다.

이와같은 內容의 軍事警戒線의 設定目的에 관해서 北傀當局은 「經濟水域을 믿음직하게 保護하며 民族的 利益과 나라의 自主權을 軍事的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軍事警戒線의 性格을 모호하게 偽裝하려는 術策으로서 그 內容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의 目的은 積極的인 軍事的 내지 安保的 效果를 노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傀의 海上軍事警戒線의 公布에 대하여 8月1日 우리 政府 代弁人(文公部長官)은 姓名을 발표하여 「우리 政府는 그들의 소위 200海里 經濟水域이나 또는 소위 軍事警戒線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다시 명백히 밝혀 둔다」고 強調하고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緊張을 造成하는 이같은 挑發的 行위를 또

기하고 現行 休戰體制와 이의 慣例를 正實하게 遵守하라」고 促求했다.

한편 北傀의 軍事境界線 設定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8月2日 國務省 代弁人이 記者會見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했다.

北韓의 軍事境界線 宣布는 「北韓의 一方的 發表이다. 同 宣布로 UN軍司令部와 美國의 休戰協定上의 權利와 責任은 조금도 制限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 北韓의 休戰協定上의 責任 또한 축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美國과 기타 많은 나라들은 다른(一般?) 國際法에 의거하여 12海里 領海 밖에서 自由航海와 自由飛行을 하고 있다. 우리는 公海上의 自由航海와 自由飛行을 一方的으로 制限하는 여하한 나라의 措置도 이를 認定치 않는다」

이같은 美國國務省의 신중한 태도에는 北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心算이 숨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美地上軍 撤收計劃을 中心으로 한 韓半島政策과 關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美國國務省의 見解는 첫째로 北傀의 一方的인 軍事境界線의 選定은 休戰協定上의 雙方的 權利와 責任을 조금도 制限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間接적으로 그것이 現休戰體制的 目的과 精神에 違背되는 것임을 暗示하였으며 둘째로 公海 및 公海上空에서 自由航行과 自由飛行의 法的 權利를 強調함으로써 北傀의 軍事境界線의 不法性을 지적하였다.

다음에는 韓國休戰協定과 一般國際法에 비추어 北傀의 海上軍事境界線이란 어떠한 性格을 갖는 것이며 아울러 그것이 政治的, 軍事的으로 어떠한 意味를 지닌 것인가를 分析, 檢討하므로써 同軍事水域의 設定이 現 休戰體制, 특히 西海 5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問題)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3) 北傀의 海上軍事境界線 設定이 現 休戰體制 및 西海 5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문제)

먼저 北傀가 宣布한 海上軍事境界線의 性格을 보전대 첫째로 그 水域에 대한 管轄權 (北傀의 이른바 自主權, 즉 主權)은 完全 排他的인 것이라는 점에서 領海에 대한 沿岸國의 管轄權보다 그 強度가 짙은 것이다. 一般國際法上 領海에 있어서는 外國船舶의 無害通航權이 認定되며 그러한 限度에서 領海에 대한 沿岸國의 主權은 制限을 받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北傀의 軍事水域은 사실상 沿岸國의 完全한 排他的 權能에 미치는 內水(internal water) 또는 內海와 같은 내용의 것이다. 둘째로 그 水域의 範圍(幅)은 領海의 그것 (一般的으로 12海里以内)보다 3~15倍 以上 (50~200海里)이나 된다.

이같은 水域은 一般國際法上 그 妥當 根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慣例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日本國政府도 거듭 밝힌바와 같이 國際法上 認定될 수 없는 不法의

水域으로서 그것의 設定은 武力을 背景으로 하여 一般國際法 秩序를 威脅하고 破壞하려는 違法行為임이 分明하다.

그러면 그 水域의 性格을 어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컨대 北傀의 軍事水域은 아마도 中共이 設定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軍事航行禁止区域, 軍事作戰区域 및 軍事警戒区域을 본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中共과 協議하여 西海(黃海)를 事實上 兩分, 內海化하여 그 海域을 閉鎖区域 또는 遮斷區域(獨逸이 1, 2次 大戰에서 實施한바 있는 Sperrgebiete)과 같은 것으로 設定한 것 같이 보인다.

1914年 11月 美國은 獨逸 潛水艦의 無警告, 無差別 攻擊에 對한 復仇로서 北海 一帶에 「軍事區域」(military area)을 設定하였는데 獨逸은 이에 對한 再復仇(counter-reprisals)로서 1915年 2月에 英國, Scotland Ireland 全周邊海域에 「戰爭區域」(Kriegsgebiet)을 設定하였으며 또한 1917년에는 仏, 伊, 希, Asia Minor 및 北何一部分의 周邊海域에 까지 그것을 擴大, 實行한바 있는데 이러한 水域을 Sperrgebiete(閉鎖 또는 遮斷區域)라 하여 國籍如何를 不問하고 따라서 中立國도 그 區域을 通航하는 船舶은 無警告 擊沈할 것을 宣布한 것이다(2次大戰에서도 英, 仏과 獨逸은 이같은 軍事水域을 設定하여 復仇에 復仇로써 對抗하였다)

이와같은 英, 獨의 軍事水域의 設定自體는 戰爭法에 違反하는 行為

이다. 특히 第3国(中立国)의 通商 및 航海의 權利를 侵害하는 違法行為로서 多数国으로 부터 猛烈한 抗議를 받았다. 2次大戦 初期에는 獨, 英의 軍事水域에 對抗하기 위해서 당시 中立国인 美洲諸国은 Zone of security (安全水域)을 設定하므로써 自衛 措置를 강구한바 있다. 한편 交戰当事国間에 있어서는 本来 違法 行為인 그와같은 軍事水域(英國의 Military area, 獨의 Kriegsgebiet 또는 Sperrgebiet)의 設定이 交戰相對方의 違法 行為를 前提로 行하는 限 그 違法성이 阻却되는 것이다. 즉, 軍事水域의 設定自體는 戰爭法에 違反하는 行為이지만 그것이 相對方의 戰爭法違反行為에 대한 反作用(復仇 또는 戰時復仇라고도 함)으로서 行하여 지는 경우에는 正当한 行為로 인정되는 것이 戰爭에 관한 一般國際法の 해석이다.

이와같은 戰爭法에 비추어 보아도 北傀의 軍事水域 設定은 違法 行為임이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첫째로 交戰中(敵 對行為 進行中)에 있어서도 그와같은 水域의 設定은 交戰当事国 以外의 第3国의 通商, 航海의 權利를 侵害하는 것으로서 違法이며 둘째로 그것은 交戰相對方(우리側)의 戰爭法 違反行為(또는 休戰協定 違反行為)에 대한 復仇의 수단으로 취한 措置도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正当化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우기 現在는 交戰中이 아닌 休戰狀態下에서 「敵對行為와 一切의 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가 保障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北傀의 軍事水域 設定은 海上에서의 武裝行動 내지 敵對行爲로서 休戰協定에도 違反하는 行爲로 規定될 수 있으며 그러한 限에서 그것은 休戰體制에 대한 挑戰이며 威脅이다. 그 威脅의 對象은 말할 것도 없이 西海와 東海의 境界周邊海域이며 특히 西海 5島의 周邊水域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北傀의 軍事水域은 그 幅(범위)에 있어서 50 ~ 200海里로 明示했을 뿐 以南의 限界에 대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는바 이것은 意圖적인 것으로서 休戰協定에 海上分界線이 明示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暗示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그리하여 北傀는 정세의 變化에 따라 何時든지 1973년에 이미 主張한 바와 같이 陸地休戰線의 海上에서의 自然 延張을 내세워 西海 5島의 周邊海域에 까지 軍事水域을 適用하므로써 同 5島의 孤立化를 企圖할 可能性이 크다.

이 以外에도 北傀의 軍事水域 設定이 갖는 政治的, 軍事的 意味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現在의 南北關係는 戰爭狀態에 있음을 確認하고 宣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對內的으로는 戰時體制를 確立하고 동시에 對外的으로는 새로운 緊張을 造成하므로써 韓半島의 現狀固定化를 打破하려는 政策의 表現

으로 보인다. 둘째는 北傀의 周辺海域에 있어서의 우리측의 情報 軍事活動을 抑制하는 效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北傀는 韓國과 美國이 다 같이 現狀維持를 基本政策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可能한 限 北傀와의 紛爭 내지 軍事的 충돌을 避하기 위하여 北傀의 軍事水域에서의 活動을 自制할 可能性이 있음을 그들의 計算에 넣고 있다. 同時에 軍事水域內에서 武力衝突이 發生할 경우에 그 責任을 우리측에 돌릴려는 속셈(戰略)도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對韓政策, 특히 對韓防衛公約의 現實的 作用을 實証적으로 試驗해 보려는 政略的 의도가 그 背景에 숨어 있는 것 같으며 이 점은 다수의 國際關係 專門家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끝으로 그 水域은 北傀가 지적한바와 같이 200海里 經濟水域內의 利益을 보다 確固히 지키기 위한 方法으로서의 의미로 있으나 이는 既述한바와 같이 副次的인 목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經濟水域에서는 外國漁船의 漁撈行爲를 規制 내지 禁止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그것으로써 그 目的(水産漁源의 排他的 管轄)을 充足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結論的 考察 및 對策

以上에서 韓國休戰體制의 法的 意味와 特性 및 그 狀況을 分析하고 그 體制下에서 西海 5島 및 그 周邊海域이 갖는 地位와 그것이 안고 있는 紛爭의 要因 또는 可能性의 問題에 관하여 概觀하였다. 여기서 結論的 考察로서 韓國休戰의 法的 및 現實的 的 意味를 要約하고 아울러 앞서의 分析에서 導出된 몇가지의 問題에 대한 對策을 提示해 보기로 한다.

昨年에 獨逸의 한 法學者가 韓國을 來訪하여 그 所感을 말하는 가운데서 「現在 韓半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戰爭이 展開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休戰狀態에 있는 南·北韓間의 不安한 긴장상태를 적절히 表現한 것으로서 休戰은 戰爭狀態의 終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法的 概念이 現實的으로도 妥當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 것이다. 또 어떤 外國記者가 韓國을 보고 돌아 가는 마당에서 「지금 韓國에는 戰爭도 없고 平和도 없다」고 한 말은 法的인 의미에 있어서 반드시 正確한 것은 아니나 오랜 동안의 休戰狀態아래에서 南北間에 敵對關係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나 武力 충돌의 潛在的 危險을 안고 있는 韓半島의 異狀 型態를 제대로 表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韓半島에 있어서의 그와같은 긴장과

不安은 그것을 象徵하는 「休戰體制」에 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世代의 特徵이 全世界를 통하여 戰爭과 平和의 그 어느 것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薄明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緣由하는 것이다.

1953年 7月 27日에 韓國休戰協定이 그 効力을 發生한지도 어언간 24年의 歲月이 흘러갔다. 그동안 北傀集團에 의한 休戰協定違反의 事例는 그 量과 質에 있어서 每擧할 수 없을 정도로서 同協定 全體를 失効化할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계속적인 軍裝備와 兵力의 大幅的인 增強은 그것을 禁止하는 協定の 規定을 사실상 廢棄한 것이나 다름없이 보인다. 더우기 최근에 이르러 北傀集團은 非武裝地帶에 땅굴과 토치카등의 軍事施設을 不法으로 구축하였으며 또한 지난 8月에는 東·西海上에 軍事水域을 設定하여 休戰協定을 違反하고 있는데 이같은 一聯의 協定違反은 總體的으로 現休戰體制를 점진적으로 打破하려는 데에 그 궁극의 目標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오늘날 韓國休戰協定은 形式的 의미에 있어서 그 効力이 持續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實質的 効力은 相對的인 軍事力의 均衡에 依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不安한 休戰體制아래에도 특히 그 政治地理的 條件과 戰略的 重要性으로 因해서 北傀에 의하여 언제나 威脅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 西海 5島 및 그 周辺海域이다. 더우기 休戰協定

은 東·西 海上의 休戰線을 設定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同 5 島 周辺海域의 地位에 關係해서 明確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써 同 海域은 北傀와의 紛爭의 要因과 可能性을 안고 있는 것이다.

勿論 休戰協定 第 2 條 15 項은 「상대방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에 隣接한 海面을 尊重하며…… 어떠한 종류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또한 同條 16 項은 「隣接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法律解釋上 陸地(및 島嶼)는 基本的으로 그 自體의 領海(沿岸海)를 가지며 또한 上空은 領空으로서 地位를 갖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同 協定은 그 自體를 「순전히 軍事的 性質」의 것이라고 規定하고 따라서 陸地 및 島嶼의 領土的 性格에 關係해서 全혀 言及이 없으며 동시에 隣接한 周辺海域의 法的地位를 「領海」, 「領空」으로 明記하지 않고 또한 管轄 海面의 範圍에 關係해서도 아무런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 바로 紛爭의 要因과 問題點이 있을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北傀는 이 點에 着眼하여 73 年에 이미 問題를 提起한바 있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分析된 問題에 대한 對策으로서 다음과 같은 長期的 및 短期的 對策案을 提示할 수 있다.

(1) 長期的 對策

6.25 宣言에 따라 南北統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過渡期 동안

暫定的 措置로서 南北關係의 現狀을 維持하면서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일이 우리의 基本政策이며 또한 當面課題일진데 그것을 위하여는 軍事力의 均衡을 維持해야 할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것에 못지 않게 法的安定性을 保障하는 制度的 裝置를 갖추는 일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 具體的 對策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提議한다.

(가) 6.23 宣言에 따라 우리와 함께 北傀를 UN에 加入시킴으로써 北傀로 하여금 國際社會의 基本法인 憲章의 規制(특히 武力의 行使뿐만 아니라 그 威脅마저 禁止하는 體制)를 받게 하고 동시에 一般國際法의 規律對象이 되도록 한다.

(나) U.N.C의 解體에 따른 休戰協定의 終了 또는 効力停止에 對備하여 韓國休戰의 實質的 當事者(實體)인 韓國, 美國, 北傀와 署名當事者의 하나인 中共을 當事者로 하는 平和協定을 締結하으로써 現 休戰協定에 代替하도록 한다. 우리는 누차 北傀와의 不可侵協定締結을 提議했으나 北傀는 이를 默殺하거나 反對하면서 美國과의 平和條約을 계속 提議해 왔다. 이같은 北傀의 提議는 전혀 事理에 맞지 않는 것일뿐 아니라 미국에 의하여 일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韓國休戰의 實質的 當事者로서 그 主된 實體인 大韓民國을 함께 當事者로 하는 平和協定이라면 現實로 받아 들일 수 있는 立場이며 나아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北傀는 對UN覺醒에서 U.N.C의 解體와 동시에 現休戰協定도 終了한다고 前提

하고 그것에 代替할 平和協定을 미국과 北傀間에 締結할 것을 提議하는 가운데 韓國休戰의 實在 当事者(이른바 real parties)는 U.N.C가 아닌 美國과 北傀라고 하고 그 理由로서 署名 当事者의 하나인 中共은 이미 그 軍隊를 撤収(解體)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같은 北傀의 論理에 따르면 韓國休戰의 real parties는 그 實體인 大韓民國과 美國 그리고 北傀集團임이 自明하다. 여기에 形式的(署名) 当事者의 一方인 中共도 包含한 四者사이에 平和協定을 締結하므로써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것은 극히 自然스러우며 또한 現實的인 構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平和協定締結의 構想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問題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反對해 온 理由로서 그와같은 平和協定の 체결에 의해서 北傀集團을 國家로서 默示的으로 承認하는 效果가 發生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6.23 宣言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北傀를 「國家로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担保가 있는 限 우리와의 關係에 서는 法的으로 그러한 效果는 發生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附言해야할 것은 우리가 提議한 不可侵協定과 平和協定은 그

格式과 名稱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內容은 大同小異한 規定으로 構成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 위의 (가)(나)의 對策과 併行해야 할 것 또는 그것에 先行해야 할 것은 소련과 中共이 大韓民國을 同時에 미국과 日本國이 北傀集團을 각각 承認하는 이른바 交叉承認이 이루어 지도록 外交力量을 集中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U.N.에의 同時 加入과 平和協定締結을 促進하는 作用이 될 것이다.

(2) 短期的 對策

(가) 現行 休戰協定을 「增補」(第5條 附別)하여 東·西 海上의 雙方의 境界線을 明確히 規定하도록 U.N.C로 하여금 北傀에 提議(停戰委)하게 한다.

(나) 우리 政府와 미국정부 + U.N.C는 機會가 있을 때 마다 지난 7月26日의 韓美安保協議會共同聲明 2項中「西海 5島를 包含하여 大韓民國에 대한 軍事的 威脅……」이라고 할 대목을 引用, 強調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西海 5島가 大韓民國의 領土로서 그것을 지키겠다는 決意를 表明하고 北傀로 하여금 그것을

再認識시키는 效果가 있을 것이다.

(다) 미국 - U.N.C로 하여금 北傀의 軍事水域設定은 國際法上 認定될 수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休戰協定에도 違反하는 行爲임을 보다 明確하게 인식케 하고 그것을 默認하지 않는다는 것을 韓·美 兩國이 行動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같은 行動은 미국의 對韓 防衛公約을 再確認하는 의미를 갖는다. 認定하지 않는다는 言明만 있고 그에 따른 存続措置가 없는 경우에는 時日이 경과함에 따라 그것을 默認하는 結果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一部の 意見은 우리도 같은 軍事水域을 設定하여 對抗해야 한다고 보는것 같으나 그것은 勿論 復活行爲로서 法的으로 正当化될 수는 있지만 復活은 再復活을 부르고 이 連鎖反應的인 復活行爲는 休戰協定 全體를 廢棄하는 結果를 초래하기 쉬울것이다.

(라) 우리도 빠른 時日안에 12海里 領海를 宣布, 施行할 必要가 있다. 그것에 따라 西海 5島로 12海里의 領海를 갖게되어 앞으로 北傀 沿岸海(領海)와의 境界線(中間線)을 制定하는 경우에 對備하는 措置가 될 것이다. 200海里 經濟水域의 設定은 주로

日本과의 關係에서 政治, 經濟上의 問題(得보다 失이 많은 可能性
이 있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海洋法會議에서 確定될때 까지)
保衛하는 것이 賢策이라고 생각된다.